

大統領令 第10686号

(1981. 12. 31 公布)

— 石油事業法 시행령중 改正令 —

石油事業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条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条(허기대상이 아닌 石油精製業) 法 第4条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精製業의 허기대상에서 제외하는 石油精製業은 溶劑·아스팔트 또는 潤滑油를 생산하는 石油精製業으로서 1일 生産能力이 2천배럴 이하인 石油精製業으로 한다.

第9条의 4 제2항중 “1달러”를 “1달러50센트”로 하고 同条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条 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輸入原油 1배럴당 美合衆國 通貨 3달러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動力資源部長官이 經濟企劃院長官과 협의하여 告示하는 금액

第9条의 4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条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比例値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輸出石油製品生産에 소요되는 原油量의 算出方法은 動力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⑧ 動力資源部長官은 石油精製業者가 原油를 精製하여 생산된 石油製品을 수출할 것을 條件으로 原油 導入契約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입된 原油를 精製하여 생산된 石油製品을 輸出하는 경우에는 수출된 石油製品生産에 소요된 原油에 대한 제2항의 備蓄基金 및 제3항의 安定基金은 이를 환급한다.

第9条의 5 제1항중 “法 第17条의 4 제1호”를 “法 第17条의 4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公社의 石油備蓄事業과 石油開發事業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4. 石油精製業者·石油販賣業者 또는 第20条 제3항의 규정에 의한 主要石油消費者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事業을 추진하는 경우 그 所要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兪자

5. 國內外 石油資源의 開發 및 探査에 소요되는 資金의 兪자

第9条의 5 제2항 本文을 다음과 같이 한다.

法 第17条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損失補塡은 다음의 경우에 행한다. 다만, 第9条의 4 제8항의 규정에 의한 輸出石油製品生産에 소요되는 原油에 대하여는 그 損失을 補塡하지 아니한다.

第9条의 5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한다.

3. 原油導入先의 多辺化를 촉진하기 위한 原油導入 추가운송비의 補塡

第9条의 5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条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兪자및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損失補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動力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第14条中 “釜山市長”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附 則

① (시행일)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조의 4의 改正規定은 1981년 11월 29일 이후 통관되는 原油分부터 적용하며, 이 令 시행전에 動力資源部長官이 행한 石油事業安定基金 징수에 관한 告示는 第9条의 4 제3항의 改正規定에 의한 告示로 본다.

③ (촉진장려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4월 19일부터 1981년 1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通관된 原油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9条의 5 제2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절차는 動力資源部長官의 告示로 정한다.

(新·旧条文 对比表)

現 行	改 正
<p>第5条(허가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 법 제4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정제업은 <u>윤활유의 정제업으로서 1일의 생산능력이 100배럴 이하의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 한다.</u></p>	<p>第5条(허가대상이 아닌 石油精製業) 법 제4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정제업은 <u>溶劑, 아스팔트 또는 潤滑油를 생산하는 石油精製業으로서 1일 生産能力이 2천배럴 이하인 石油精製業으로 한다.</u></p>
<p>第9条의4(수입금의 징수비율 및 징수방법)①(생략)</p> <p>② 제 1 항의 비축기금은 수입원유 1 배럴당 美合衆國通貨 1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 1 항의 안정기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p> <p>1. 수입원유 1 배럴당 미합중국통화 1.5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p> <p>2. 원유의 기준가격(이하“기준가격”이라 한다.)과 원유의 실투입 본선인도가격과의 차액(이하 “기준가격과의 차액” 이라 한다)</p> <p>3. (생략)</p> <p>④(생략)</p> <p>⑤ 제 3 항 제 2 호의 기준가격·기준가격과의</p>	<p>第9条의4(수입금의 징수비율 및 징수방법)①(現行과 같음)</p> <p>② 제 1 항의 비축기금은 수입원유 1 배럴당 美合衆國通貨 1 달러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 1 항의 안정기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p> <p>1. 수입원유 1 배럴당 미합중국통화 3 달러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u>動力資源部長官이 經濟企劃院長官과 협의하여 告示하는 금액</u></p> <p>(삭제)</p> <p>3. (現行과 같음)</p> <p>④(現行과 같음)</p> <p>⑤ 第4項의 규정에 의한 比例値와 第8項의</p>

現 行	改 正
<p>차액의 산출방법과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비례치는 <u>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⑥-⑦(생략)</p> <p>(신설)</p>	<p>규정에 의한 輸出石油製品生産에 소요되는 原油量의 산출방법은 <u>動力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u></p> <p>⑥-⑦(現行과 같음)</p> <p>⑧ <u>動力資源部長官은 石油精製業者가 原油를 精製하여 생산된 石油製品을 수출할 것을 條件으로 原油導入契約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입된 原油를 精製하여 생산된 石油製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된 石油製品生産에 소요된 原油에 대한 第2項의 備蓄基金 및 第3項의 安定基金은 이를 환급한다.</u></p>
<p>第9条의5(기금의용도)</p> <p>① 법 제17조의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p> <p>1. 석유의 비축·저장에 필요한 설비의 시설(관리·유지비를포함한다)</p> <p>2. 비축용 석유의 구입(수수료, 이자 등 부대경비를 포함한다)</p> <p>(신설)</p> <p>(신설)</p>	<p>第9条의5(基金의 용도)</p> <p>① 법 第17条의 4 第1号 및 第2号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p> <p>1. 석유의 비축·저장에 필요한 설비의 시설(관리·유지비를포함한다)</p> <p>2. 비축용 석유의 구입(수수료, 이자 등 부대경비를포함한다)</p> <p>3. <u>公社의 石油備蓄事業과 石油開發事業의 추진에 필요한운영비</u></p> <p>4. <u>石油精製業者, 石油販賣業者 또는 法第20条 第3項의 규정에 의한 주요석유 소비자가 第1号 또는 第2号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所要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자</u></p>

現 行	改 正
〈신 설〉	5. <u>国内外 石油資源의 개발 및 탐사에 소요되는 資金의 융자</u>
② 法 第17條의 4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은 <u>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u>	② 第 法17條의 4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은 <u>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다.</u> 다만, 第 9 條의 4 第 8 項의 규정에 의한 輸出 石油製品生産에 소요되는 原油에 대하여는 그 損失을 補填하지 아니한다.
1. 原油의 실도입 본선인도가격과 원유의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1. 原油의 실도입 본선인도가격과 원유의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2. 石油製品의 수입가격과 석유제품의 국내공장도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2. 石油製品의 수입가격과 석유제품의 국내공장도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3. <u>原油의 수입에 따른 換差損의 보전</u>	3. <u>原油導入先의 多辺化를 촉진하기 위한 原油도입 추가운송비의 보전</u> (삭 제)
4. <u>할증료·프리미엄 및 기타수입부대비용</u>	(삭 제)
5. <u>국내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원유 수입의 촉진 장려</u>	(삭 제)

現 行	改 正
6. 제 1 호 내지 제 5 호 이외에 석유제품 가격의 평준화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에 게 발생한 손실의 보전	〈삭 제〉
③ 제 2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第 1 項 第 4 号 및 第 5 号의 규정에 의한 용자 및 第 2 項 第 1 号 내지 第 3 号의 규정에 의한 損失補填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動力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삭 제)
④ 동력자원부장관이 제 2 항 제 3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第 14 條 (권한의 위임)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法 第 23 條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第 14 條 (권한의 위임)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法 第 23 條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 6. (생 략)	1. - 6. (現行과 같음)
② (생 략)	② (現行과 같음)

청탁풍조 배격하여
명랑사회 이룩하자